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4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서명옥
엄태영 · 김성원 · 박성훈
김승수 · 강명구 · 조지연
김재섭 · 최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한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둌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u>이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u>
1. ~ 9. (생략) ③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